

‘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찰 수사 제한 규정 대거 삭제

검수복원법...10일부터 시행

민주 “시행령 쿠데타” 강력 반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법 시행을 사들 앞두고 마무리됐다.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개정 과정에서 전면 폐지했다.

대검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

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삼권 분립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부위원회 39% 줄어든다...246개 폐지·통합

행안부, 법령개정안 이달중 상정

행안부행안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법령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

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식물위원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정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부실 위원회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전체의 39%로 당초 목표 30%를 훨씬 초과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여의도 라운지

이병훈 ‘국유재산 매각 국회 동의’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부·사진) 국회의원은 7일 국유재산의 ‘협약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자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 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유·저활용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



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분별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재정부담을 불러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회의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동용, ‘외부기관 검증’ 연구부정검증 개선 개정안 발의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한 가운데 대학의 자체검증으로 종결되는 현재의 연구부정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 국회의원이 7일 대표발의 한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내의 자체 조사와 검증 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 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태풍 피해 현장 찾은 이재명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조”

침수 피해 지원금 증액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태풍 한반도 피해 현장인 경북 포항을 찾았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태풍 피해지역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를 돌았다. 노란색 ‘민방위 점퍼’에 파란색 장화 차림이었다.

현장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일부 지도부만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도 나왔다.

이대표는 이 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난 피해 지원금과 관련, “침수 피해 지원액이 200만원이다. 너무 소액이라 지원금액을 정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며 보상에 상황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 중인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

나 “이 대표가 현장을 둘러보고 5가지를 강조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침수피해 보상액 현실화 및 보상대상 확대 ▲특별교부세 확대 ▲포항지역 배수펌프장 신속 보완 ▲민주당 자원봉사단 참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당 재난해태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은 “일단이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에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2-75호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남개발공사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 1. 공모 직위 및 인원 : 사장 (1명)
-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3. 보수 및 근무지

- 연봉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결정되며, 성과급은 사장경영상과계약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4. 주요 직무내용

- 택지개발, 기업·혁신도시 개발 및 농어촌 개발
- 주택 및 공공 건축물의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
-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 공공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 기타 전남개발공사 정관 제4조에 관련된 사업

5. 직무수행요건 : 불임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수행요건” 참조

6.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임용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신 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9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9. 8.(목) ~ 2022. 9. 26.(월) 18:00까지
나. 지원서교부 :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 다운로드 위드 또는 자필로 작성

다. 접수방법 : 다음 아래방법 중 선택 1

- 1) 이메일 : recruit@jndc.co.kr (8번 항목 제출서류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2) 방문 (공휴일 제외,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3) 등기우편 (공휴일 제외,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라. 접수장소 :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8층 경영지원처)
※ 주소 : (우편번호 58566)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8층 경영지원처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8. 제출서류

- 지원서(사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 *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수행요건을 참조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전략, 추진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되, 5매 이상인 경우 2~3매의 요약서 일부분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전남개발공사 임원결격사유 자가 점검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1부.

9. 심사절차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임원 후보자 심사기준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 심사 실시 후 도지사에게 추천

※ 합격자(최종추천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 가. 임원(사장)후보자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2배수 추천하며, 전라남도지사가 책임자를 최종 임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등의 허위사실기재와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다. 최초 지원자 접수결과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마.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바.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3년 이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061-280-0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